

■ 최신 법령 ■

[자본시장] 공매도 보고제도 신설

이행규 변호사 | 이은영 변호사

금융위원회는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하는 경우 직접적인 공매도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여 201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개정되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공매도 보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고기준 비율 :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총수 대비 0.0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2) 보고 기한 :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 (3) 보고대상 : 상장 주식
- (4) 보고사항 : 해당 증권, 인적 사항, 공매도 포지션 및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공매도는 한국거래소 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시장을 교란하고 불공정 거래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매도 거래 자체에 대해서만 보고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투자자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는 경우 보고하도록 하여 감독당국이 현황 자료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상장 주식'에 한하여 적용되고 주식 이외의 다른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포지션에 특별한 변동이 없더라도 0.01%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매일 보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